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2월 11일, 김용태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2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6. 3. 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6. 3. 23.)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

제2차 국방위원회(2026. 3. 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원안)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용태의원)

미활용 군용지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관할 지역의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활용 군용지의 체계적 관리 및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제6호 및 제7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문성환)

- 현행법(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미활용 군용지란 현재 군이 사용하지 않아 국방부가 매각 등을 위해 관리하고 있는 부지를 말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군의 과학화·병력감축 등의 이유로 군부대 통폐합 및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 등 여러 지역에 미활용 군용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미활용 군용지의 내용을 일반법에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미활용 군용지의 정의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도지사가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요청하는 경우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파악하여 단절되고 낙후된 군용지의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봄.
- 다만, 미활용 군용지 현황에 군사기밀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경우 군사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활용 군용지 정보 중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 등 제외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부승찬)

미활용 군용지의 체계적 관리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없음

[붙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미활용 군용지”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부대부지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① 국방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 <u>미활용 군용지</u> ”란 「 <u>국방개혁에 관한 법률</u> 」 제5조에 따른 <u>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부대부지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u>
<u><신 설></u>	제7조의2(<u>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u>) ① <u>국방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u> ② <u>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u>